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의
통보 의무 규정〉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2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의 통보 의무 규정 (안 제31조의2제6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5. 19.

다. 회 부 일 : 2026. 5.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분 권한을 가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의 통보 의무 규정 (안 제31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신설>	○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의 통보 의무 규정 - 공공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등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여 교부 결정의 취소를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분 권한을 가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려는 것으로, 관계기관 간 부정수급 정보의 적기 공유를 통해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동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며, 공공기관이 업무상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인지한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행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은 부정수급 징후 등에 대한 통보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법문상으로는 사업시행주체인 공공기관 외에 모든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잠재적 통보 의무가 부여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보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장을 현행법에 따라 보조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정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보조사업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통보 의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 ⑤ (생략)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조금수령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 ----- ----- ----- ----- ----- -----.

문 의 처

02)6788-5152